

# 2016년 강북센터 “버럭” 2월호

## Contents

(자립생활주택) 문화체험	2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안내	4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획득하며.....	6
장애아동과 가정	8
장애인 에티켓 - 자폐성 장애	10
이달의 정보	12
강북센터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14
강북센터 2016년 세입·세출 예산	16
이달의 시	18
회원가입	20
광고	22



# 자립생활주택 문화체험

## [영화 ‘좋아해줘’ 관람하기]

박남주

보고 싶은 한국영화로 예쁜 여배우 최지우와 이미연이 나오는 ‘좋아해줘’를 고른 정양균씨는 코디와 활동보조인의 놀림에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도 제일보고 싶은 영화라며 기대감을 보이셨다. 영화 ‘좋아해줘’는 한국판 러브액츄얼리처럼 여러 커플의 사랑 이야기가 옴니버스처럼 전개되는 영화인데 정양균씨의 취향을 딱 저격한 줄거리인 듯 했다.



문화체험이지만 자립생활 훈련 영역에 맞추어 코디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혼자서 티켓팅을 시도한 정양균 씨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장애인할인 + 원데이 할인가까지 받아 2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던 티켓을 17,500원에 구매하셨다.



약속시간은 12시지만 영화 시작 시간은 오후 2시 30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우리는 점심식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롯데시네마가 있는 백화점 지하로 내려갔다. 정양균씨와 활동보조인은 불고기 돌솥 비빔밥을 드시고 코디네이터인 나는 다이어트 중인 관계로 샐러드를 점심으로 먹었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영화 시작 시간까지 여유시간이 꽤 남아있어 영화관 옆의 커피숍에서 음료 한잔씩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커피숍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카페로 통하는 통로에 놓인 15칸 정도의 계단!!! 활동보조인의 걱정을 뒤로하고 입주자의 건강한 자립생활 영위하도록 돕는다는 사명감에 힘써인 나는 코디네이터로서 살이 찌서 배가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가형 입주자 정양균씨를 열심히 독려하여



계단 오르기를 함께 시도하였다. 끄응~ 소리를 연발하며 아이구 아이구를 외치시던 정양균씨도 막상 계단 정상(?)에 오르니 뿌듯함에 얼굴이 화사해지셨다. 그러나 계단 옆에 딱 하니 자리잡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보고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에게서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 우하하~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네 ”

“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야 운동도 되고 좋지~ ”

“ 아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으면 간단했을 것을.. ” 엘리베이터 덕분에 한바탕 웃고 나서 정양균씨는 오랜만에 계단을 올라서 목이 탄다며 시원한 음료를 시켰다.

드디어 영화시작시간, 혼자서 티켓팅도 성공하신 정양균씨는 이번에도 혼자 영화 티켓을 확인받으라는 코디의 말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성큼 직원에게 다가가 본인이 티켓팅 한 영화표 세장을 내밀었다. 영화 시작 전에 먹은 음료가 걱정돼 화장실에 들렀다 오시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자리에 앉으신 정양균씨는 영화 중간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다르게 영화 시작시간부터 끝까지 영화에만 집중하며 재미있는 장면에서 크게 웃으시며 영화를 즐기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영화가 끝나고 소감을 묻는 코디에게 농담조로 예쁜 여배우 최지우를 보다가 코디를 보니 현실감이 확 느껴진다고 놀리기도 하셨다.



영화 관람이 끝나고 센터로 복귀해야 했던 나는 아직 쇼핑할 게 더 남았다고 근처 잡화점을 맴도는 정양균씨를 활동보조인에게 부탁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나중에 확인 전화를 하니 아이쇼핑 후에 정양균씨가 구입한 것은 핸드폰 목걸이 줄이라고 했다. 무료로 받은 핸드폰 목걸이 줄이 있으신대도 굳이 줄을 구입하신 부분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만족도조사를 위해 후에 전화상담을 했을 때 쇼핑을 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으나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라는 잔소리를 해버렸다. 그러나 마음 좋으신 우리 정양균씨. 허허 웃으며 자기가 꼭 갖고 싶었다는 항변과 함께 싸게 샀으니 너무 염려 말라는 당부까지 해주셨다.

우리 정양균씨께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혼자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그날까지 나와 입주자의 밀당(?)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내용 안내

박동렬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li> <li>시설 퇴소 후 신청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li> <li>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개시전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 퇴소 여부를 확인 후 급여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외대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li> <li>·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사람은</li> <li>· 노인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상세히 안내할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 동안, 단기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신청은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내에서는 사용의 제한을 둠.</li> <li>* 다만, 시설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할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30일까지 이용가능) 입원 중인 자</li> </ul>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li> <li>배우자 : 남편, 아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li> <li>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li> </ul>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격 갱신 간소화 대상</li> <li>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li> <li>와상상태임을 자치단체에서 인정받아 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li> <li>수급자가 와상상태임을 주장하여 공단이 확인을 받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격 갱신 간소화 대상</li> <li>수급자격 갱신 인정조사 결과가 기존 등급과 동일하면서,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자</li> <li>다만 2015.6.30. 이전에 기존 인정조사 간소화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자는 2015.7.1.부터 갱신간소화 대상으로 인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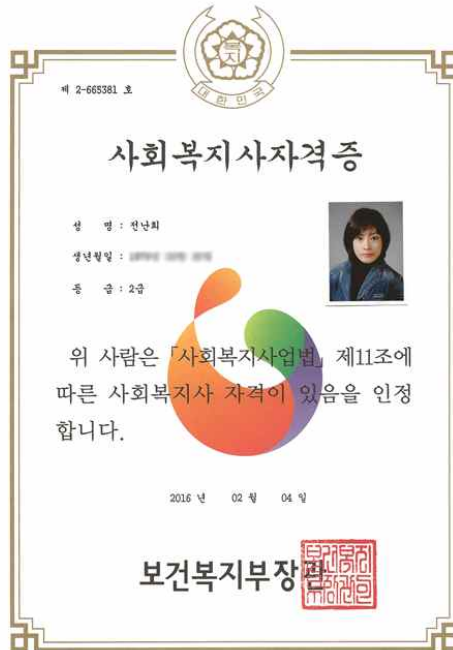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대상자 선정	추가급여수급요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가구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 1~2급 장애인</li> <li>•나머지구성원의 직장생활등 추가급여 : 1~2급 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가구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 1~3급 장애인</li> <li>•나머지구성원의 직장생활등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 1~3급 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가구 추가급여 수급요건</li> <li>-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공단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li> <li>* 다만,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가구 추가급여 수급요건</li> <li>-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인정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li> <li>-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가구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가구로 인정되지 않음</li> <li>* 1인가구 추가급여는 공단의 현지 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급여 수급해당</li> <li>*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를 준용함. 다만,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자 일시부재 친족의 요건</li> <li>- 공무원 경조사사의 친족의 범위 준용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일시부재 친족의 요건</li> <li>-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준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li> </ul>
활동지원급여중단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한 경우</li> <li>•급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li> <li>•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li> <li>•수급자가 3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li> <li>•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li> <li>•급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li> <li>•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li> <li>•수급자가 3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li> <li>•수급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하지 않을 때</li> <li>•수급자가 급여의 중단을 신청할 때</li> <li>•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li> </ul>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대상자 선정	활동 지원 급여 중단 및 재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의 중단 신청 및 재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의 중단신청 : 수급자는 중단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신청</li> <li>- 급여의 지급 재개 : 급여를 다시 받고자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li> <li>- 지급재개신청 : 중단 사유 해소일로부터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가능</li> <li>- 지급중단기간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지급재개결정이 처리된 달의 말일까지</li> </ul> </li> <li>* 급여의 중단 및 재개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별도 안내 예정</li> </ul>		
	병원 입원 기간의 가산	•기간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월 31일로 정함			•기간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함		
	병원 입원시 구비 서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것과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증빙자료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li> <li>•증빙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기관에서는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ul>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중지 사유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명확화	중지 사유	요건	바우처 사용 중지기간	중지 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본인 포기	대상자 본인의 급여 중지 요청	중지 요청일 다음날부터 계속	본인 포기	급여 대상자 본인의 급여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속	사망·말소 등	급여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
		자격 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일부터 계속	자격 종료	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 가능
		판정 결과 (등급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등급 외 결정	수급자격 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일부터 계속	판정 결과 (등급외)	급여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등급 외 결정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 가능
		사업 종료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속	자격 정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바우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능
		자격 정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바우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동안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활동 지원 인력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중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참여자(주 30시간, 월120시간 이상)의 경우 근로일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타 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전일제와 시간제 중복참여 불허)</li> <li>* 다만, 시간제(주 30시간 미만)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필요에 따라 또는 주말/특정일에만 참여) 중복참여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 일자리」중복(동시)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 전체</li> <li>· 소득보전형 사업*은 모두 전일제로 간주</li> <li>*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등</li> <li>- 전일제 일자리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중복</li> <li>·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li> <li>* 다만, 행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근로시간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li> <li>- 시간제·간헐적 일자리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li> <li>·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중복참여 허용</li> </ul> </li> </ul>
사후 관리	부당 지급 급여의 징수	<활동지원기관 징수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원기관이 지급받아 사용하는 금액은 활동지원법에 따른 급여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환수대상임</li> <li>•부당지급급여의 징수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지급 원인이 없음에도 잘못 지급된 금액의 사후적 반환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지급에 활동지원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징수를 면할 수 없음</li> </ul>

#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획득하며…….

전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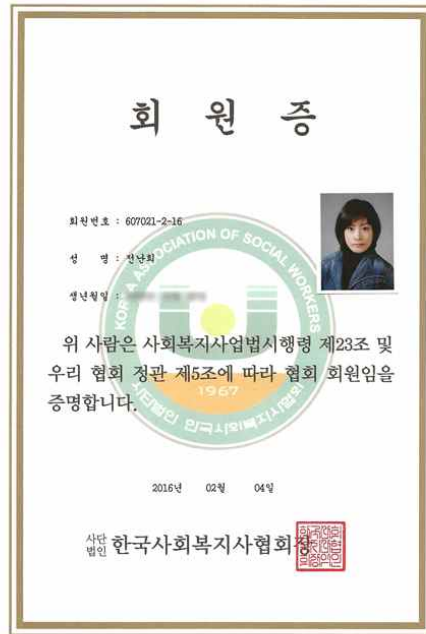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푼 두푼 모으고 있었으나 그때 나는 백수였기 때문에 학비를 모으는 일이 정말 힘이 들었다. 처음부터 일을 하며 공부를 할 거라는 계획은 아니었으나 뜻밖에 행운이 나에게 찾아와 준 것처럼 나는 작년 10월 강북센터에 취직이 되면서 자격증 준비와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고대하던 취업도 되고 자격증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엔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리라! 마음을 먹었지만, 문체는 체력!! 나의 저질체력이 잘 따라와 줄지 걱정이 되었지만,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고대하던 취업으로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역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건 무리였던 것일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가자 나는 처음에 마음먹었던 설렘은 사라진지 오래고, 피곤함으로 강의는 겨우겨우 들었으며, 주말엔 하루 종일 자기 바빴다.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리였던 모양 이었나보다.

내가 학수고대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 온 작년 한해인 것 같다.

작년 한해의 보람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회원증이 드디어 내 손안에 들어왔다. 남들이 보면 1급도 아니고 2급 취득한 걸로 뭘 그리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적어도 나 본인한테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싶다.

# 장애아동과 가정

이하용



대부분에 장애아동 부모는 아이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며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를 보며 기쁨보다는 슬픔, 희망보다는 절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아동을 둔 가족 모두는 아이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재활·교육과 더불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협신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에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그렇지 못하다. 가까운 사례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봐도 느낄 수 있듯이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시기 위해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나의 교육을 위해, 또 나의 신체적 재활훈련을 위해 어머니 홀로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나를 키우셨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의 화합은 물론이고 어머니 외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물론 적극적인 아버지나 적극적인 가족들은 장애아동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장애가 심할 경우 부모(특히 어머니)가 24시간 아이에 곁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부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된다.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가정교육은 부모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본질을 벗어나 가정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공간과 시간 및 사물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다. 또 이 기심으로 형성된 자아는 사회적 관계와 신체화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장애아동 가정이라고 해서 다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 중에서도 장애아동과 다른 가족들에 상호작용이 원만한 가족은 장애아동의 적성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과 예절 교육을 가르침으로써 어휘능력·감정의 이해·의사소통 등의 여러 가지 개념을 형성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가정교육은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와 타인과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서로 상호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장애아동은 사회적인 기본원리와 타인간의 공감능력 등이 발달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장애아동보다 더 관계형성이나 이해력에 있어서도 뛰어나다. 또 학습적인 관점이나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월등함 보여 질 수 있다. 이는 장애아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非)장애아동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정교육은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아심리를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학습을 통해 장애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당당한 사회인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을 도모한다.

자료출처-<http://cafe.daum.net/cbablemam/EPNN/>

사진출처-<http://cafe.daum.net/poetsea/5KW/8033?q=%BE%EE%B8%D3%B4%CF&re>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장애인 에티켓 - 자폐성 장애

허성현



발달장애인은 감정, 의견의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배려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고지식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일과표를 작성하여 일과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주고, 사전에 약속된 순서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문자, 그림으로 된 일과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습관이 몸에 베기까지는 오랜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9시 작업시작, 10시 간식먹기, 11시 가방챙기기 등

일과를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새로운 일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등에 심하게 불안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행동특성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던가, 계속소리를 낸다던가 하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예행연습 등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 가능하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비장애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어떤 발달장애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함께 하는 발달장애인의 이런 특성을 알고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에 대해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언어적 주의만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 "차 피해" 라고 말만하기 보다는, 말과 함께 빨리 팔을 잡아끌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기술들 즉, 공공장소이용법, 돈계산하기, 가전제품사용법, 대중교통이용하기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돈을 알지만 정확한 계산 등은 어려우므로 비장애인이 함께 계산해 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 (예: 전자오락기, 텔레비전, 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전자오락기에 집착하는 발달장애인과 여행을 가야 할 경우 전자오락실, 전자제품 양판점 같은 것이 있는 길은 피해서 코스를 선택합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장애인복지\_장애인에티켓

[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jsp?Depth=4611&idx=15&no=59#con](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jsp?Depth=4611&idx=15&no=59#con)

# 이달의 정보

박계형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1~2 급 세대주 이고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이며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 : 75백만 원, 3인 이상 가구 : 85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매년 초(2,3월경)에 있으며, 신청접수는 동 주민 센터에서 받습니다.

출처 - <http://disability.seoul.go.kr/support/support.jsp?Depth=2311#acCont1>

##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집수리 사업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1~4 급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 주택 포함)  
우선 고려사항  
대상가구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1~2급) 정도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주택개조의 시급성

선정방법대상가구 선정방법은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신청시기주택개조 대상가구 신청은 매년 초(2,3월경)에 신청접수는 동 주민 센터에서 받습니다.

출처- <http://disability.seoul.go.kr/support/support.jsp?Depth=2311#acCont1>

## 2016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계획

장애인의 가정 내(외(外))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개요

-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00가구(가구당 약 4~6백만 원 소요)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 전문가 실사, 대상가구선정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사업비 : 500백만 원(시비 100%)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전문적인 실적과 경험 보유)
- 접수기간 : 2016.01.18.(월) ~ 02.29.(월)
- 신청 장소 : 동 주민 센터 (02-901-2298)

출처-

<http://www.gangbuk.go.kr/suyu1/boardView.do?post=293341&page=&boardSeq=281&key=1239&category=&searchType=&searchKeyword=&searchFile=&subContents=&mpart=&part=D3080052&item>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안해영

세 입						
관	항	목	2015년	2015년	증감(B-A)	
			A (예산)	B (결산)	금액	비율(%)
<b>세 입 총 계</b>			<b>2,141,566,777</b>	<b>2,365,351,971</b>	<b>223,785,194</b>	<b>10.4%</b>
사업수입	합 계		1,734,000,000	1,896,855,819	162,855,819	9.4%
	사업수입	소 계	1,734,000,000	1,896,855,819	162,855,819	9.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1,734,000,000	1,896,855,819	162,855,819	9.4%
보조금수입	합 계		212,685,000	214,185,000	1,500,000	0.7%
	보조금수입	소 계	52,000,000	53,500,000	1,500,000	2.9%
		장애인고용장려금	52,000,000	53,500,000	1,500,000	2.9%
	기타보조금수입	소 계	160,685,000	160,685,000	-	0.0%
		서울시센터지원사업	96,000,000	96,000,000	-	0.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	49,161,000	49,161,000	-	0.0%
		서울시중증장애인인턴지원사업	12,374,000	12,374,000	-	0.0%
		지방자치보조금지원사업	3,150,000	3,150,000	-	0.0%
후원금수입	합 계		6,000,000	11,147,735	5,147,735	85.8%
	후원금수입	소 계	6,000,000	11,147,735	5,147,735	85.8%
		지정후원금	-	-	-	0.0%
		비지정후원금	6,000,000	11,147,735	5,147,735	85.8%
전입금	합 계		45,993,000	82,103,552	36,110,552	79%
	전입금	소 계	45,993,000	82,103,552	36,110,552	78.5%
		시설회계전입금	45,993,000	82,103,552	36,110,552	78.5%
차입금	합 계		-	6,000,000	6,000,000	0%
	차입금	소 계	-	6,000,000	6,000,000	0%
		기타차입금	-	6,000,000	6,000,000	0%
이월금	합 계		129,452,777	129,452,777	-	0.0%
	이월금	소 계	129,452,777	129,452,777	-	0.0%
		전년도이월금	128,040,565	128,040,565	-	0.0%
		전년도이월금(후원금)	1,412,212	1,412,212	-	0.0%
		이월사업비	-	-	-	0.0%
접수입	합 계		13,436,000	25,607,088	12,171,088	90.6%
	접수입	소 계				
		불용품매각대	-	-	-	0.0%
		기타예금이자수입	90,000	96,838	6,838	7.6%
		기타접수입	13,346,000	25,510,250	12,164,250	91.1%



세			출			
관	항	목	2015년	2015년	증감(B-A)	
			A (예산)	B (결산)	금액	비율(%)
<b>세 출 총 계</b>			<b>2,141,566,777</b>	<b>2,365,351,971</b>	<b>223,785,194</b>	<b>10.4%</b>
사무비	합 계		9,100,000	8,840,664	- 259,336	- 2.8%
	인건비	소 계	4,000,000	4,219,540	219,540	5.5%
		급여	1,000,000	958,120	- 41,880	- 4.2%
		퇴직적립금	-	-	-	0.0%
		사회보험부담금	-	-	-	0.0%
		기타후생경비	3,000,000	3,261,420	261,420	8.7%
	업무추진비	소 계	700,000	722,000	22,000	3.1%
		기관운영비	700,000	722,000	22,000	3.1%
		회의비	-	-	-	0.0%
	운영비	소 계	4,400,000	3,899,124	- 500,876	-11.4%
		여비	-	-	-	0.0%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00	668,190	- 331,810	-33.2%
		공공요금	900,000	792,000	- 108,000	-12.0%
제세공과금		1,000,000	916,070	- 83,930	-8.4%	
차 량 비	1,500,000	1,522,864	22,864	1.5%		
사업비	합 계		2,031,938,000	2,172,517,251	140,579,251	6.9%
	사업비	소 계	2,031,938,000	2,172,517,251	140,579,251	6.9%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825,260,000	1,954,702,950	129,442,950	7.1%
		서울시 센터 지원 사업	136,203,000	148,655,856	12,452,856	9.1%
		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	53,301,000	52,169,153	- 1,131,847	-2.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 사업	12,374,000	12,215,000	- 159,000	-1.3%
		지방자치보조금사업	4,800,000	4,774,292	- 25,708	-0.5%
전출금	합 계		45,993,000	92,103,552	46,110,552	100.3%
	전출금	소 계	45,993,000	92,103,552	46,110,552	100.3%
		시설회계전출금	45,993,000	92,103,552	36,110,552	78.5%
상환금	합 계		-	5,000,000	5,000,000	#DIV/0!
	부채상환금	소 계	-	5,000,000	5,000,000	#DIV/0!
원금상환금		-	5,000,000	5,000,000	0.0%	
잡 지 출	합 계		1,900,777	1,754,337	- 146,440	-7.7%
	잡 지 출	소 계	1,900,777	1,754,337	- 146,440	-7.7%
		잡 지 출	1,900,777	1,754,337	- 146,440	-7.7%
예비비 및 기타	합 계		1,000,000	3,327,311	2,327,311	232.7%
	예비비 및 기타	소 계	1,000,000	3,327,311	2,327,311	232.7%
		반 환 금	1,000,000	3,327,311	2,327,311	232.7%
이월금	합 계		51,635,000	81,808,856	30,173,856	58.4%
	이월금	소 계	51,635,000	81,808,856	30,173,856	58.4%
		차기이월금	51,635,000	81,808,856	30,173,856	58.4%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안해영

세 입						
관	항	목	2015년	2015년	증감(B-A)	
			A (예산)	B (결산)	금액	비율(%)
<b>세 입 총 계</b>			<b>2,141,566,777</b>	<b>2,318,557,000</b>	<b>176,990,223</b>	<b>8.3%</b>
사업수입	합 계		1,734,000,000	1,896,000,000	162,000,000	9.3%
	사업수입	소 계	1,734,000,000	1,896,000,000	162,000,000	9.3%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1,734,000,000	1,896,000,000	162,000,000	9.3%
보조금수입	합 계		212,685,000	218,467,000	5,782,000	2.7%
	보조금수입	소 계	52,000,000	54,000,000	2,000,000	3.8%
		장애인고용장려금	52,000,000	54,000,000	2,000,000	3.8%
	기타보조금수입	소 계	160,685,000	164,467,000	3,782,000	2.4%
		서울시센터지원사업	96,000,000	115,000,000	19,000,000	19.8%
		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	49,161,000	49,467,000	306,000	0.6%
		서울시중증장애인인턴지원사업	12,374,000	-	12,374,000	-100.0%
지방자치보조금지원사업	3,150,000	-	3,150,000	-100.0%		
후원금수입	합 계		6,000,000	12,000,000	6,000,000	100.0%
	후원금수입	소 계	6,000,000	12,000,000	6,000,000	100.0%
		지정후원금	-	-	-	0.0%
비지정후원금	6,000,000	12,000,000	6,000,000	100.0%		
전입금	합 계		45,993,000	80,000,000	34,007,000	74%
	전입금	소 계	45,993,000	80,000,000	34,007,000	73.9%
		시설회계전입금	45,993,000	80,000,000	34,007,000	73.9%
차입금	합 계		-	-	-	0%
	차입금	소 계	-	-	-	0.0%
		기타차입금	-	-	-	0.0%
이월금	합 계		129,452,777	102,000,000	- 27,452,777	-21.2%
	이월금	소 계	129,452,777	102,000,000	- 27,452,777	-21.2%
		전년도이월금	128,040,565	100,000,000	- 28,040,565	-21.9%
		전년도이월금(후원금)	1,412,212	2,000,000	587,788	41.6%
이월사업비	-	-	-	0.0%		
잡수입	합 계		13,436,000	10,090,000	- 3,346,000	-24.9%
	잡수입	소 계	13,436,000	10,090,000	- 3,346,000	-24.9%
		불용품매각대	-	-	-	0.0%
		기타예금이자수입	90,000	90,000	-	0.0%
기타잡수입	13,346,000	10,000,000	- 3,346,000	-25.1%		

		세		출			
관	항	목	2015년	2015년	증감(B-A)		
			A (예산)	B (결산)	금액	비율(%)	
<b>세 출 총 계</b>			2,141,566,777	2,318,557,000	176,990,223	8.3%	
사무비	합 계		9,100,000	11,100,000	2,000,000	22.0%	
	인건비	소 계	4,000,000	6,000,000	2,000,000	50.0	
		급여	1,000,000	3,000,000	2,000,000	200.0%	
		퇴직적립금	-	-	-	0.0%	
		사회보험부담금	-	-	-	0.0%	
		기타후생경비	3,000,000	3,000,000	-	0.0%	
	업무추진비	소 계	700,000	800,000	100,000	14.3%	
		기관운영비	700,000	800,000	100,000	14.3%	
		회의비			-	0.0%	
	운영비	소 계	4,400,000	4,300,000	- 100,000	-2.3%	
		여비	-	-	-	0.0%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00	1,000,000	-	0.0%	
		공공요금	900,000	800,000	- 100,000	-11.1%	
		제세공과금	1,000,000	1,000,000	-	0.0%	
차 량 비		1,500,000	1,500,000	-	0.0%		
사업비	합 계		2,031,938,000	2,222,612,800	190,674,800	9.4%	
	사업비	소 계	2,031,938,000	2,222,612,800	190,674,800	9.4%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825,260,000	1,993,944,000	168,684,000	9.2%	
		서울시 센터 지원 사업	136,203,000	175,701,000	39,498,000	29.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	53,301,000	52,967,800	- 333,200	-0.6%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 사업	12,374,000	-	- 12,374,000	-100.0%	
		지방자치보조금사업	4,800,000	-	- 4,800,000	-100.0%	
전출금	합 계		45,993,000	80,000,000	34,007,000	73.9%	
	전출금	소 계	45,993,000	80,000,000	34,007,000	73.9%	
		시설회계전출금	45,993,000	80,000,000	34,007,000	73.9%	
상환금	합 계		-	-	-	#DIV/0!	
	부채상환금	소 계	-	-	-	#DIV/0!	
		원금상환금	-	-	-	0.0%	
잡 지 출	합 계		1,900,777	2,844,200	943,423	49.6%	
	잡 지 출	소 계	1,900,777	2,844,200	943,423	49.6%	
		잡 지 출	1,900,777	2,844,200	943,423	49.6%	
예비비 및 기타	합 계		52,635,000	2,000,000	- 50,635,000	-96.2%	
	예비비 및 기타	소 계					
		반 환 금	1,000,000	2,000,000	1,000,000	100.0%	
		예비비 및 기타	51,635,000	-	-	0.0%	

# 오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오해는  
뜨개질 할 때 한 코를  
빠뜨린 것과 같아서  
처음 잘못 뒀을 때 고치면  
단지 한 바늘로 해결된다.

\_이진이 『어른인척』 중 P 35

## 16년 02월 회비납부 명단

박계형 박남주 박동열 박민숙 박시연 박원배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안해영 예성호 오재준 우의정 유수근  
윤두선 이경희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이태연  
이하용 이화선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최양호 최윤숙 최창현 홍점표 황석재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2016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자 모집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생활시설거주 퇴소 장애인 및 제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주거환경에서의 생활능력을 키워주고, 자립생활의 이념 및 기술훈련 등을 습득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체험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이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입주안내

- 입 주 대 상 : 생활시설거주 퇴소 장애인 및 제가중증장애인
- 입 주 기 간 : 협의가능
- 신 청 기 간 : 수시신청
- 입주자 지원 : ① 주 택 - 오피스텔 원룸  
② 생활비 - 개별생활비, 생필품은 본인부담  
공과금은 지원(과잉 징수 시 본인부담)  
③ 기 타 - 기본물품인 세탁기, 청소기, 정수기 등 비치되어 있으나 고장 및 파손 시 본인부담, 강북센터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함, 기타 생활규칙 규정은 강북센터의 원칙에 동의해야 함
- 모 집 인 원 : 1명
- 구 비 서 류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시설장소견서 (생활재활의견서 포함) 또는 장애인단체장추천서, 건강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우선 입주신청서만 첨부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추후 제공합니다.**

- 신 청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신청, E-mail 신청
- 신 청 문 의: 강북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906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전화번호- 02.980.7776

팩스- 0303.0799.1758

E-mail- kbcil@hanmail.net

인터넷- <http://www.kbcil.co.kr>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906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